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5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김소희 · 안상훈 · 박준태
조경태 · 김선교 · 이양수
김상훈 · 서지영 · 이헌승
이종배 · 안철수 · 김예지
최보윤 · 서천호 · 김은혜
김석기 · 권영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국수어가 모국어인 청각장애인은 한글 이해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 결과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여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하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이에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및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거공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제122조의2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5조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수어 QR코드 제작비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①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후단 신설>	② ----- ----- ----- ----- ----- ----- ----- ----- ----- ----- ----- ----- ----- ----- ----- ----- <u>. 이 경우 선거공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u>
③ ~ ⑭ (생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③ ----- ----- ----- ----- ----- ----- ----- ----- ----- ----- ----- ----- ----- ----- ----- ----- <u>.</u> ----- -----

다. 1. · 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④ · ⑤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65조제2항에 따른 청각</u> <u>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u> <u>의 수어QR코드 제작비용</u>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